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근대적’ 전환*

홍태영 | 국방대학교

| 국문요약 |

1789년 혁명과 함께 시작된 프랑스에서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은 제3공화국에서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확립을 통해 일정하게 완성된다. 신이 아닌 개인에 기반하고 그들의 시민 및 국민으로서 구성과 국민주권의 확립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매개하고 또한 그 역사를 형성하는 민주주의의 과정이 19세기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것은 세속화된 권력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주권에 근거한 국민국가의 성립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이 진행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 글은 주권과 국가에 대한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을 통해 1789년에 부활한 민주주의 – 고대 아테네적 의미의 민주주의 – 가 프랑스 공화주의를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근대 민주주의 제도로서 정착하게 되었는가, 즉 민주주의의 ‘근대적’ 전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 형성된 공화주의모델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면서 근대 국민국가 및 근대 민주주의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큰 틀을 형성하는 공화주의적 시민에 대한 상과 시민교육의 문제(II장), 공화국의 중심적 내용을 형성하는 ‘사회적인 것’을 해결을 위한 ‘연대주의’의 문제(III장)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공화국이 근대 국민국가로서 가지는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을 이해함으로써 공화주의가 구성하는 공동체의 특성을 그려보고자 한다(IV장).

주제어 | 공화주의 모델, 민주주의, 정치신학, 연대주의, 주권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20S1A3A2A01095861)이다.

I. 들어가는 말

1789년 프랑스혁명과 함께 등장한 국민주권 혹은 인민주권 개념 그리고 결국은 주권자로서 인민의 출현은 근대 국민국가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프랑스혁명 당시 그리고 19세기 동안 주권자로서 인민의 존재와 그것을 대표(representation)하는 의회 사이의 간극은 현실성의 차원에서, 즉 국민/인민 주권의 구체화에 있어서 난점을 드러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인민의 봉기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국민/인민주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즐로가 말했듯이, 19세기 프랑스는 “권력으로부터 가장 소외되었던 인민의 한 분파가 여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주권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조건을 개선할 능력이 없다면”, 국민/인민 주권 개념이 어떠한 가치가 있을 것이며, 단지 속임수에 불과하지 않은가? 라는 반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동즐로 2005, 29). 19세기 동안 프랑스 민주주의의 중심 과제 중의 하나는 국민/인민주권에 대한 이해의 방식을 둘러싼 것이었다. 국민주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동즐로가 제기했듯이, 1848년 혁명과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한 ‘사회적인 것(le social)’의 문제는 국민주권을 둘러싼 이해의 간극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고, 그것의 해결이야말로 1789년에 시작된 근대 국민국가의 구체적인 현실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제3공화국은 1789년에 시작하여 19세기 동안 프랑스 정치를 규정하였던 이성 과 수의 갈등 그리고 사회적인 것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것은 프랑스혁명과 함께 등장한 근대의 정치공동체로서 국민국가의 주체로 설정된 시민과 시민들의 집합체로서 국민의 위상, 그리고 그로부터 출발하여 확립된 국가권력의 형성과정, 즉 시민들의 정치적 실천이라는 민주주의의 구체화이든 대표를 통한 정치이든, 이는 국민국가의 정치적 형태로서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양식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근대 정치철학에서 전제하였던 근대적 개인들에 의한 국가권력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주권의 실현 과정이었다. 19세기 말 제3

공화국은 ‘사회적인 것’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 국민/인민주권 및 국가에 대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였다. 공화주의적 교육을 통한 공화주의적 시민에 대한 상의 정립과 연대주의를 통한 공화주의적 연대의 형성 및 그에 기반한 ‘사회적인 것’의 해결은 국민-국가의 연결로서 주권 개념 및 대표 개념의 새로운 정립이기도 하였다. 주요하게 국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대한 새로운 위상을 정립시켜 나가면서 ‘의회주의’를 확립시켰고, 그것은 대표 개념은 물론 주권 개념의 변환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즉 1789년 혁명 시기에 있었던 국민/인민주권의 분리 및 ‘국민’과 ‘공화국’에 대한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의 작동이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근대정치의 여전한 아포리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근대의 정치적 주체로서 시민의 탄생과 국민으로의 구성 그리고 그들에 의한 국가권력의 확립과정에서 작동하였던 대표의 과정과 주권의 실현과정은 세 개의 분리된 과정이자 동시에 서로에 영향을 주면서 맞물려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875년 성립된 프랑스 제3공화국은 19세기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었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냄으로써 1789년 혁명에서 등장한 프랑스 공화주의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공화국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고, 그러한 공화국의 틀은 현재까지 프랑스 공화국의 모태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흔히들 제3공화국은 타협으로서 공화국으로 불린다. 한편으로 19세기를 거치면서 극단적 흐름들이 사라졌다. 즉 1871년 파리코뮌을 통해 극단적이었던 블랑키주의자들이 사라졌고, 그 이전 제2제정을 거치면서 왕당파와 보나파르트주의자들이 스스로의 정당성을 잃어버림으로써 정치 전면에서 후퇴하였다. 따라서 중도세력들, 중도우파의 자유주의자와 중도좌파의 공화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의 타협으로서 제3공화국이 탄생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 프랑스혁명 이후 대립하였던 다양한 이념과 사유들의 타협을 통한 공화국의 구성이었다. 정치세력의 측면에 타협적 공화국을 공화주의화하는 과정을 통해 공화국의 내용을 채우고자 하였고, 또한 그것은 1789년 프랑스혁명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이자 동시에 19세기 동안에 제기된 해결의 방식들에 대한 반성적 결과이자 타협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

이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실행할 ‘이성’과 공화주의적 ‘덕성’을 갖춘 시민을 만들어내고, 그에 기반한 민주주의적 정부를 구성 – 국민주권의 실현 – 하는 것을 통해 민주주의적 국가의 모습을 갖추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적 국가를 통해 ‘사회적인 것’을 해결함으로써 공화주의적 통합을 성취해 내는 것이 프랑스 제3공화국을 통해 구성해낸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모습이다.¹⁾

국민의 구체적 구성과 국민에 의한 국가권력의 확립이라는 주권의 실현은 1789년에 시작된 근대적 국민국가 형성의 일정한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이 아닌 개인에 기반하고, 개인들의 시민 및 국민으로서 구성과 국민주권의 확립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매개하고 또한 그 역사를 형성하는 민주주의의 과정이 19세기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것은 세속화된 권력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주권에 근거한 국민국가의 성립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이 진행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주권과 국가에 대한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을 통한 이해는 1789년에 부활한 민주주의 – 고대 아테네적 의미의 민주주의 – 가 프랑스 공화주의를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근대 민주주의 제도로서 정착하게 되었는가, 즉 민주주의의 ‘근대적’ 전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큰 틀을 형성하는 공화주의적 시민에 대한 상과 시민교육의 문제(II장), 공화국의 중심적 내용을 형성하는 ‘사회적인 것’을 해결을 위한 ‘연대주의’의 문제(III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공화국이 근대 국민국가로서 가지는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을 이해함으로써 공화주의가 구성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1) 공화주의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신로마공화주의, 즉 고대 로마공화국과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의 부활 속에서 법에 의한 통치, 혼합정, 비지배적 자유 등에 대한 부각과 그것의 현재성에 대한 논의는 익히 알려져 있다. 그와 대비되어 프랑스 공화주의는 주권에 대한 특수한 개념으로 인해 혼합정 보다는 인민주권 개념에 주목하였고, 그에 따라 덕성을 갖춘 시민에 기반한 정치참여에 대한 강조, 사회적인 것에 대한 공동체적 해결 등에 대한 강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3공화국에서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은 공화국의 내용을 채우고 프랑스 공화주의를 구성해 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신로마적 공화주의 전통, 즉 대서양적 전통의 공화주의와 루소적 흐름의 대륙적 공화주의 차이에 대해서는 홍태영(2021) 참조.

그려보고자 한다(IV장).

II. 공화국과 시민

1. 공화주의적 개인주의

19세기를 거쳐 민주주의가 부침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시민 형성과 시민교육의 문제는 정치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시민은 우선은 정념과 의지, 욕망의 주체라는 개인의 차원에서 출발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형제애의 주체이자 공적 덕성의 실현자라는 차원을 고려해야 하는 존재였다. 시민교육과 관련한 제3공화국의 첫 번째 법률이었던 1882년 3월 28일 법은 일종의 ‘신이 없는 학교에 관한 법’으로서 종교 및 도덕 교육을 도덕 및 공민교육으로 대체하는 법률이었다. 이 법률은 ‘타락한 인간’이라는 기독교적 개념과 단절하고 시민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는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의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공민적 의무(*devoirs civiques*)’와 자기자신에 대한 의무를 연결시키면서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위생학(*l'hygiène du corps et de l'esprit*)’을 근본적인 도덕적 의무로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Murard et Zylberman 1996). 자율적이고 책임성을 갖는 개인들이 사회라는 축조물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제3공화국이 흔히들 루소와 콩도르세를 결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공화국 개념은 물론 그들이 상정하였던 시민의 모습, 즉 이성과 공화주의적 애국심 모두를 갖춘 시민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공화주의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인주의적 가치와 공화주의적 형제애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화해시킬 수 있는 공화주의적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공화국의 시민들에게 개인의 자율성 강조하고, 더불어 도덕과 공민교육을 통해 도덕적 규율을 내면화시키고자 하였다. 공화주의자들은 기존의 종교적 색채의 도덕 개념을 거부하고, 도덕을 관찰과 추론을 통해 만들어진 경험과학으로 만들고자 하였다(Lalouette 2002, 145). 즉 형이상학적 도덕을 거부하고 도덕을 “습속의 과학”으로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화주의적 도덕을 확립하기 위해 교육은 중요한 도구로 제시되었다. 공화주의적 개인주의는 시민과 인간의 열망을 화해시키고자 하였으며, 개인 능력의 만개와 국민적 집단 이익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대립을 도덕교육을 통해 해소해야 하였다. 도덕 및 공민 교육은 시민들에게 자신에 대한 통제를 강제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규준을 확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뒤르케임의 사회학에서 상정하고 있는 개인과 개인주의는 개별인간(*la persone*)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la personne sociale*)을 구성하는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에 근거하는 것이다(Déloye 1994, 34). 이러한 뒤르케임의 사유체계는 뒤르케임에 영향을 미친 르누비에(*Ch. Renouvier*)나 푸이에(*A. Fouillé*)의 신칸트주의의 영향이다. 개인주의에 충실하였던 르누비에였지만, 원자론적인 개인주의에 맞서서 사회 속의 개인을 사유하였고, 그러한 차원에서 개인의 사회에 대한 의무를 사유하고자 하였다(Blais 2007, 145-147). 푸이에 역시 개인들 사이 존재하는 개인의 의무가 사회적 연결을 위한 구성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Berstein 1999, 129).

심리학 역시 공화주의 도덕과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의지(*volonté*)에 대한 교육, 진정한 의지, 계몽되고 이성적이며 자유로운 의지가 바로 개인성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형이상학적 도그마와 종교에 대항하는 ‘과학’에 대한 신념, 합리적 이성 등에 대한 강조는 콩도르세의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의 연장선상에 있었다(Nicolet 1982, 288-289). 개인의 해방은 자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이성적인 시민의 상 속에서 그 성취가 이루어진다. “인간은 어떻게 자유로우면서 법에 종속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

발적인 복종이 공화주의적 도덕의 본질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다(Déloye 1994, 90). 개인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도덕적 힘이었다. 복종해야 할 공화국과 공화국의 법이 결코 외재적인 것이 아니라 ‘진보’의 과학적 법칙에도 부합하고 또한 합리적인 이성의 원칙과도 합당한 것이다. 또한 공화주의적 도덕가들은 특정한 정념, 즉 삶의 본질이자 도덕적 에너지의 근원으로 간주되는 특정한 정념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성(raison)과 의지(volonté)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념(passions)에 근거하여 행위하도록 하며,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 속에서 정념이 이끌어지도록 한다(Déloye 1994, 95). 정념들을 규율하기 위해 이성애 호소하는 것은 인간이 교육을 통해 계몽되는 순간부터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공화주의 도덕가들에게도 타당하고 또한 필요한 것이었다.

공화주의적 도덕교육과 더불어 공민교육으로서 민주주의 교육에서 보통선거권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투표행위가 시민 형성에서 본질적인 요소로서 작용하며, 선거행위는 신성한 의무라고 간주되었다. 투표는 “자유롭고 의식적이며, 계몽적이며 동시에 이익으로부터 분리된(désintéressé) 행위”여야 했다(Déloye 1994, 124). 투표행위자의 독립이 강조되었고, 투표를 통해서 국민주권의 표현에 참여하는 것이었고,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시민을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투표권자는 개인의 이익을 떠나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국민으로서 의견을 표출해야 했기에, 사적인 행복을 일반이익에 종속시키는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했다. 투표권자는 사회적 지평을 확장해야 하며, 보편적인 틀 속에서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 공화주의 도덕가들은 개인의 이기심과 시민공동체에의 참여가 양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공화주의자들은 진정성 있는 시민이란 누구인가? 라고 물었고, 그것은 “투표행위가 있는 날, 바로 일반이익에만 사로잡혀 있는 시민”이라고 답하였다(Déloye 1994, 125).

당시 공화주의 도덕에 대한 강조 속에서 공화주의자들이 바람직한 공동체에 대해 상상했던 것은 ‘과거 구체제와 유사성을 갖는 공동체’와 ‘사회적 갈등이 난

무하는 현대 사회' 사이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는 곧 주권자로서 등장한 국민(nation)이라는 정치적 주체에 대한 사유와 더불어 네이션이라는 공동체의 모습에 대한 상상이기도 하였다. 다시 묻는다면 nation은 공동체인가 아니면 사회인가?였다. 퇴니스(Tonnies 1887)가 제시한 공동체인가, 사회인가라는 개념적 대립 속에서 국민이라는 집단은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퇴니스에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지닌 반면에, 사회는 이익의 개인화에 근거하여 존재한다고 구별되었다. 따라서 네이션을 개인들의 이익의 단순한 총합 이상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였고, 네이션을 '이익들의 공동체'이자 동시에 '동정(sympathie)에 근거한 사회'라는 것, 개인들의 이익의 필연적 연대의 공동체로서 상상하고자 하였다. 학교를 통해 양성하고자 하는 공화주의적 시민의 모습은 개인주의와 동시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민적 의무를 실행하는 시민이었고, 이들에 의해 구성된 네이션의 모습이 그러한 이중성을 반영한 것이어야 했다. 이러한 모델에서 학교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개인-시민'으로 하여금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동의 시민으로 구성된 '상상의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학교라고 간주되었다. 개인이라는 기초에서 출발하여 공동체라는 최종 지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학교를 통해 사회적 삶을 구성해내는 방식이었다.

공동체로서 네이션의 형성 과정은 19세기 말 가톨릭 공동체라는 전통적인 공동체 개념은 물론 19세기 자본주의 발달 속에서 형성된 공리주의적 사회 개념 모두를 거부하면서, 개인주의에 기반하지만 동시에 세속화된 정치적, 문화적 동질화를 통해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해 내하고자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네이션이 프랑스혁명 이래 공화주의자들이 강조해 온 "위대한 국민(Grande Nation)"으로서 공화주의적 프랑스를 의미하였고, 이는 빅토르 위고가 강조하였듯이, "자유와 진보의 근원으로서 인류의 등대"라는 것이었다(Darriulat 2001, 239에서 재인용). 위대한 국민의 공화국으로서 프랑스는 또한 보편주의적 공화국(République universelle)으로서 인간주의적이고 보편주의적 철학과 국민

적 공간 – 애국주의적 공간으로서 – 이라는 경계의 필요성 사이에서 화해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그것의 구체적인 예가 1차 대전이 종결된 후 레온 부르조아(Léon Bourgeois)가 시도한 국제연맹 – Société des nations –이었다(Berstein 1999, 132). 그것은 애국주의와 평화주의의 결합이었고, 공화국과 보편적 문명의 결합이었다.

2. 공화주의적 연대와 사회적 공화국

공화주의적 도덕을 내면화한 시민의 형성이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에게 주요한 과업이었지만, 그것의 한계는 분명하였다. 국민 및 공화국 내부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적 유대를 형성시킬 장치가 필요하였다. 그 장치로서 제시된 것이 공화주의적 연대 및 연대주의였다. 공화주의적 연대 및 연대주의는 민족/국민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소속감 및 사회적 유대를 실질적으로 형성 시킴으로써 국민적 동일성을 갖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발텍-루소법(la loi de Waldeck-Rousseau 1884)을 통해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 국가는 한걸음 물러서서 그들 사이 분쟁의 심판자 역할만을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들 사이의 경기의 규칙을 가능한 한 공정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발텍-루소법은 노동자의 권리의 차원에서 그들에게 조합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 한정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어찌 됐건 적어도 19세기 내내 쉽게 인정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연대와 연합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것이었다. 물론 1860년대 나폴레옹 3세에 의해 노동조합의 권리가 인정되었지만, 그것은 경제적 영역에 한정된 것이었고, 이제 노동조합에게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적 발언권을 부여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회적인 것’에 대해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인 해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었고, 공화국은 ‘사회적인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찾아야 했

다. 이는 제3공화국 초기 공화주의자들이 공화국을 확립하고 공화주의적 시민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통해 공화국의 기초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러한 공화국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공화국을 구성해 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문제가 단지 정치적인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와 결합되어 있음을 인식한 것이고, 19세기의 오랜 역사적 과정의 반영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이미 토크빌이 이해한 사회(학)적 상태로서 민주주의, 즉 단지 주권의 문제나 정치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은 민주주의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공화주의적 도덕가들은 루소가 인식하였던 개인주의와 시민성 사이의 대립을 지양하는데 성공했다고 자신하였다. 교육과 관용, 공민교육은 의지(volonté)에 대한 교육이며, 자신의 통치로서 집단적 의무이자 권리의 총체로서 인식된 공민주의의 행사를 가능케 하였다. 이제 시민권은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여야 했다. 공화주의적 개인주의와 세속화에 기반한 공화국의 도덕이 완성되는 것은 ‘연대(solidarité)’와 ‘연대주의(solidarisme)’를 통해서였다. 결국 뒤르케임의 사회학적 도덕을 통한 공화국의 도덕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뒤르케임은 쥘 페리에 의해 시작된 세속화된 도덕 개념의 한계 혹은 잘못된 전제를 비판하였다. 그것은 쥘 페리의 세속화된 도덕 개념은 결국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의 모든 인간에게 유효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을 상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Durkheim 1975, 464).

사회학자로서 뒤르케임은 도덕 문제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접근방법을 비판하였으며, 결국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인간은 사회적이고 물리적 공간 속에서 살아가며, 도덕 역시 그러한 인간들과 함께 변화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결국 도덕의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성격을 강조한 것이었고, 뒤르케임은 도덕의 존재이유를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의 목표에 봉사하는 개인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다. 뒤르케임이 도덕의 개인주의적 토대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도덕은 개인이 사회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에 적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세속화의 도덕만으로는 충분

치 않다고 판단한 뒤르케임은 집단적 전체만이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각각의 시민들에게 일반이익을 위한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도록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다. 뒤르케임은 “개인의 이기주의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집단의 힘일 뿐이다”라고 보았다(Durkheim 1996, 401).

미래의 시민은 ‘사회적인 것’이 추상적인 총체가 아니라 사회학이 인식하는 살아있고 복잡한 실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사회는 “무엇보다도 모든 종류의 이념, 믿음, 감정들의 총체를 표상하며, 개인들에 의해서 구체화(실현)된다; 그리고 그 이념들의 최우선에 도덕적 이념이 존재한다.”(Durkheim 1974, 79). 바로 도덕이 인간들 사이에서 그들을 연결시키는 권리와 의무의 체계를 지속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낸다. 사회적 삶의 조건으로서 연대(solidarité)가 제기되어야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노동분업의 과정은 개인의 탄생과정이며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의존성을 강화시킨다. 개인은 사회적 인간성을 인식해야 하며, 그를 위해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이기주의적 충동과는 다른 기반 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덕이 필요한 것이다. 뒤르케임은 도덕의 세속화와 공민적 의무의 합리적 증명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880년대 세속화된 도덕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공화주의적 개인주의와 사회적 연대 사이를 화해시키고자 하는 것이 세기의 전환기에서 뒤르케임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기반하고 계몽주의 이래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주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 뿌리를 둔 초기 공화주의 도덕가들의 개인주의적 행보와 사회적 인간과 그 의무 개념에 기반하여 이제 갓 탄생한 사회학의 행보가 뒤르케임의 도덕에 대한 사유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공화국은 개인의 주도권과 소유권의 보호라는 의지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그를 위한 국가의 정정의 역할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성취하여야 했다. 일반이익의 이름으로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일정한 제한의 명분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뒤르케임의 연대에 대한 사회학적 개념을 확장하여 연대주의(solidarisme)를 구성해낸 레온 부르조아(Léon

Bourgeois)는 연대주의를 통해 기독교가 정식화한 자선(charit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동시에 프랑스혁명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또한 제3공화국 초기 시민 교육 교과서가 제시한 형제애의 추상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레온 부르조아의 저서 『연대주의(Le Solidarisme)』(1896)에서 말하는 도덕적 의무는 ‘사회적 빛’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된다. 시민이 타자에 대해 인정해야 하는 의무는 각자가 사회적 상황에서 얻는 이익에 대한 반대급부이며, 모두에 대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다. 도덕적 의무는 이익의 대가로서 얻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빛에 대한 인정이다. 국가는 개입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삶에 대한 사회의 지지를 제공하고 또한 동시에 개인에게 모두의 더 좋은 삶을 위해 행해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중적 권리를 갖는 것이었다.

뒤르케임의 사회학과 레온 부르조아의 흐름에 앞서 독자적으로 ‘사회경제학(l'économie sociale)’의 전통에서 연대와 연대주의를 제시했던 이는 지드(Charle Gide)이다. 19세기 프랑스에서 사회경제학의 전통은 정치경제학 전통, 즉 경제적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흐름을 비판하면서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상호부조, 협동조합, 노동조합 등 결사체를 통해 사회적인 것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Gueslin 1998). 사회경제학자들에게 ‘연대’는 경제학적 개념으로서, ‘이익들의 연대’였고, 이를 위한 경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샤를 지드의 경우, 형제애(fraternité)는 이미 낡은 개념이며, 삶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연대’는 결코 자족적이지 못한 개인들에게 특별한 사회적 기능을 부여하면서 타인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서로를 상호의존하는 관계로 연결시키면서 공동 운명체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Blais 2007, 199). 지드는 협동조합체제에서 연대가 그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며, ‘사회적 연대의 표상’으로서 국가가 의식적인 연대를 구성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회학적 흐름과 사회경제학적 흐름 모두 19세기 동안에 경쟁하였던 자유주의와 맑스주의 사이에서 종합적 테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맑스주의의 계급투쟁이나 계급 개념의 거부와 자유주의의 방임주의적 국가관을 모두 거부하는 것이었다.

제3공화국 초기의 공화주의적 개인주의를 넘어서 연대주의에 근거한 사회적 공화국의 모습은 프랑스 공화주의가 영미적 공화주의와 구별되는 지점으로서 구체적으로 정치체제와 제도를 통해 구현된 형태이자 모델로서 확립되었다. 제3공화국이 만들어낸 ‘공화주의 모델’은 프랑스 공화주의의 구체성이다. 연대주의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것은 1907년에 급진공화당과 급진-사회당이 공동으로 채택한 ‘낭시 프로그램 14개 조항’이다. 이를 들여다보면, 단기적으로 국가의 역할은 어린이, 병약자, 노령층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하며, 여성과 아동노동에 대한 규제입법을 실행해야 하고, 산업재해 시 고용주의 책임, 보험제도, 노사 분쟁 시 조정 의무 등 집단적 계약을 시각을 통한 접근 등으로 제시되었다(Berstein 1992, 194-195).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가 개입을 통해 소생산자 및 중산층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이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세 가지 과정이 제시되었는데, 첫째는 누진세의 강화를 통한 재정의 방식, 구성원들의 지적 능력과 재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통한 사회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의 방식, 개인들의 소유를 구성하기 위한 입법의 방식 등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공화주의적 연대를 통해 공화주의자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사회는 ‘중간계급’과 다양한 중간집단들로 구성된 사회, ‘중간계급의 프랑스’였다. 물론 루소가 꿈꾸었던 ‘소생산자의 사회’를 구체화하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많은 곤란함에 부딪혔고, 구체적으로 20세기 자본주의의 발달 속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 시기 연대주의에 근거한 사회정책과 프랑스 사회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프랑스 사회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작동하고 있다.

III. 의회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전환

공화주의적 시민과 사회적 연대와 더불어 이에 기반한 주권의 구성의 문제가

등장한다. 결국 어떻게 인민주권을 구성할 것인가? 또한 현실적으로 등장한 원자화된 대중 사회에 어떻게 형태를 부여하고 비유기적인 군중의 망령을 어떻게 내쫓을 것인가? 이 문제가 19세기 말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이 문제는 근대 정치철학적 인민과 19세기 등장한 사회학적 인민 사이의 괴리 속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이 문제는 또한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결합된 것이었고, 중국적으로 이어지는 주권의 구체화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대표(representation)의 문제와 주권(souveraineté)의 문제가 결합되어 있었다.²⁾

1. 의회주의의 확립

1848년 혁명과 함께 선언된 남성보통선거권의 실행이 만들어낸 결과는 루이 나폴레옹의 대통령 당선 그리고 제2제정 기간 동안 황제의 통치를 합리화하는 수단 - 이른바 신임투표(plébiscite)의 역할 - 으로 전락하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은 민주주의적 장치로서 투표행위가 제자리를 찾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공화주의적 시민교육을 통해 정치적 주체로서 시민을 만들고자 하였고, 투표행위의 실질적인 결과가 민주주의적 절차로서 자리잡도록 시도하였다. 민주주의적 절차로서 투표행위는 무엇보다도 19세기 동안 끊이지 않았고, 1871년 파리코뮌에서 보여주었던 폭력의 일상화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시민의 투표행위는 폭력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정치적 상황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었다. 투표를 통한 대표행위는 정치적, 사회적 투쟁의 관리의 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폭력과 소요, 즉 폭동은 이제 더 이상

2) 의회주의의 다양한 흐름과 이론적 특성을 탐구한 Ihalainen et al.(2016) 그리고 Aerts et al.(2019) 등에 따르면, 의회주의를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대표, 주권의 문제와 함께 심의(deliberation), 책임(responsibility)의 문제를 제시하고 네 가지 측면에서 의회와 근대 의회주의 확립을 둘러싼 특수성들을 살피고 있다. 의미있는 접근이기도 하지만, 본문에서 볼 것처럼, 프랑스 의회주의의 확립과정을 통해 본다면, 심의의 문제는 대표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일정하게 결합되며, 책임의 문제는 권력분립의 문제를 통한 주권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적 행위의 개념 속에서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았다. 투표를 통한 다수결에 의한 합의의 가능성이 열렸고, 또한 투표행위는 사회적 규율화의 장치로서 확정되었다. 또한 19세기 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선거권의 확장에 따른 대중의 정치적 진출은 물론 사회적 이익집단 및 노동운동의 조직화 그리고 정당의 발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동하면서 의회는 정치적 쟁투의 장이나 대상이 되었고, 또한 정치적 의제와 사회적 요구들을 수렴할 역할을 부여받는 등 정치사회적 장의 중심에 등장하였다(Aerts et al. 2019, 10). 당시 르봉(1895)의 말처럼 의회는 “현대의 문명화된 이상”으로 표상되었다(르 봉 2005, 216).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이 의회주의를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극단적인 혁명을 피하기 위해 보나파르트주의자나 보수주의적 공화주의자, 자유주의자들과의 연합 혹은 대화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권력의 교체 가능성’을 수용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분명 이전의 ‘완고한’ 공화주의자들과는 차별화된 점으로 가히 ‘혁명적인’ 것이었다(Grévy 1998, 52-53).

제3공화국 들어서 의회주의가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내각의 책임성(responsibility) 개념이 도입되었다(Garrigues & Anceau 2016, 57-58).³⁾ 즉 의회의 의원은 질의하고 발의하고 결의하고 또한 내각의 구성원을 호출하기 시작하였다. 제3공화국에서 의회와 대통령의 초기의 권력균형은 맥마혼(Mac-Mahon) 대통령에 의해 의회해산권이 실행된 후 겪은 위기 이후 의회로 권력이 집중되는 방향, 즉 일반의지의 실현체인 의회의 우위라는 프랑스혁명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시민들의 투표 행위의 결과로서 성립된 의회는 이제 공화주의 정치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우선 주권자로서 내이션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3) 프랑스의 의회주의는 일반적으로 혁명적이기보다는 덜 급진적인 시기에 영국의회의 방식대로 선택적으로 흡수하면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795년 테르미도르 이후 양원제, 1815년 이후 내각책임제나 심의(deliberation)에 대한 강조 등이 그것들이다(Ihalainen 2016, 29). 19세기 동안 공화주의 프랑스에 대립하는 자유주의 영국 모델이라는 구도가 존재하였고, 프랑스 혁명 이후 영국에 대해 우호적인 흐름들은 영국 의회주의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었다(Darriulat 2001).

확립하고자 하였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래 ‘인민(people)’은 ‘다양하고 변화하는’ 따라서 구체성을 띤 인민의 모습으로 개념화되었다면, 이제 ‘국민(nation)’은 응축된 신체이자 추상화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치적 과정에 개입하는 인민과는 거리를 두는 의회 권력이 강조되고 국민주권에 대한 강조는 동시에 의회, 즉 국민의 일반의지의 체현으로서 의회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다. 이것은 거리의 구체적인 인민적 권력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었다. 이제 국민주권 개념은 대의제적 형태와 분리될 수 없으며, 주권자로서 국민의 추상화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실질적인 주권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Rosanvallon 2000, 233). 이는 인민적 권력의 위험성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며, 의회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가 주권자라는 방식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 시기 국민주권 개념을 헌법학적으로 정립하고자 했던 카레 드 말베르그(Carré de Malberg 1922)는 1791년의 비인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이해된 국민주권과 1793년 시민들의 세분화되고 직접적으로 활동적인 힘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된 인민주권을 구분하였다. 이것은 조직화된 유기적 집단으로서 국민과 비유기적이고 위협적인 균중으로서 인민의 구별이었으며, 대의제에 근거한 국민주권과 의회주의의 강화로 이어졌다. 국민주권은 정부의 대의제적 형태와 분리될 수 없었으며, 일반이익은 그것에 대한 해석과 조직화된 형태를 통해서만 유추될 수 있었다. 국민주권의 표현이자 그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선거는 더 이상 임무의 전달 – 마치 직접민주주의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위임명령(mandat impératif) – 이 아니라 통치엘리트의 선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고, 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는 일반이익을 숙고하는 현자들과 전문가들의 모임으로서 이해되어야 했다.⁴⁾ 결국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의제 및 일반이익의 이해

4) 이미 버크(E. Burke)가 구분하였고,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 당시에도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던 ‘현실적(actuel)’ 대표와 ‘가상적(virtuel)’ 대표 사이의 긴장이며, 오래된 논의이다. 이에 대해서는 Pitkin(1967); 비에리아 & 런시먼(2020) 참조.

등은 프랑스혁명 이래 강조되었던 ‘수’에 대비되는 ‘이성’에 대한 강조의 문제였다. 그리고 이미 기조(F. Guizot)에 의해 선언되었던 ‘이성의 주권’이 비민주주의적이 아닌 민주주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⁵⁾ 즉 민주주의적 엘리트주의이며, 일종의 ‘선출된 귀족정’이라고 할 수 있다. 1880년대 수상이었던 쥘 페리는 민주주의적 엘리트에 근거한 공화주의 제도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그 목표가 “공화국을 보통선거 기반 위에 놓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는 ‘수(nombre)’의 위협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하는 것이었다 (Rosanvallon 2000, 241).⁶⁾

이와 함께 대표자와 대표되는 자, 즉 인민/국민의 관계 역시 새롭게 설정되었다. 과거 위임명령(mandat impératif)에 대신하여 대표위임(mandat représentatif)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당시 헌법학자 에스맹(Esmein 1896)은 대표는 하나의 기능이며, 의회는 선거 지역의 축약이 아니라, 하나의 권력, 자율적인 권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권적 인민의 대표자들을 특징짓는 것은 그들이 인민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인민은 대표자들의 입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말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Rosanvallon 2000, 263에서 재인용).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대표 개념을 통해 국민은 자신의 주권을 실현한다고 간주되었고, 공화국 역시 그러한 개념을 받아들여 새롭게 규정되었다. 능력있는 정부에 대한 사회학적 전망으로서 ‘절대적 공화국(République absolue)’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⁷⁾ 뒤르케임은 위임명령을 비판하면서 국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

5) 로장발롱은 제3공화국은 민주주의적 공화국이지만 동시에 이성의 주권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조의 계기(le moment Guizot)’였다는 주장하고 있다 (Rosanvallon 1985).

6) 의회가 광범위한 사회의 충실한 복제가 아니라 사회의 가장 우수한 부분의 집합이라는 사유는 19세기 영국에서도 역시 존재하였다(te Velde 2019, 32-33). 대표로서 의회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19세기 자유주의자들에게는 공통된 인식이었을 것이다.

7) 강베타(Gambetta), 페리(J. Ferry) 등 3공화국 초기 20여년 동안의 공화주의자들은 ‘공화국’을 ‘보통선거권 위(au-dessus du suffrage universel)’에 놓고자 하였다. 즉 정부의 공화주의적 형태가 ‘수’에 의해 좌우되거나 여타의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시하였다. 뒤르케임은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통치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사고는 통치되는 사람들의 그것과 동일하고 융합된다”는 사유가 바로 ‘명령적 위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뒤르케임은 국가의 역할은 “인민대중의 비판성적 사고를 표현하고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판성적 사고에 더욱 깊이 생각된, 따라서 다르지 않을 수 없는 사고를 더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결국 국가는 “새롭고 독창적인 표상의 중심이고 또 중심이어야 하며, 이런 표상은 사회로 하여금 보다 큰 지성을 갖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뒤르케임 1998, 163).

대표 개념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정하게 민주주의적 변화의 방향으로의 전환이 발생한 것은 분명하였다. 우선 선거 양상이 변화하였다. 선거에서 공약집이 등장하여 의원 후보들은 자신의 정치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했다. 결과적으로 1881년 선거는 강베타(Gambetta) 등 공화주의자들의 의회진출에서 보이듯이 과거 “명사들의 공화국(République des notables)의 패배”를 의미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결국 이러한 과정은 “민주화”의 진행이 새로운 형태의 “과두정화”의 결과를 낳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민주주의, 즉 대중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증오와 멸시가 증가되었고, 또한 동시에 대표자들에 대한 부정적 묘사가 등장하기도 하였다.⁸⁾

이러한 의회주의의 확립과정은 19세기 말 선거권이 확장되면서 민주주의의 확장, 즉 대중의 정치적 참여 공간의 확장이라는 사실과 맞닥뜨리면서 이루어졌다. 그러한 점에서 의회의 이러한 권한 및 권력 강화에 대하여 의회의 권한 남용

점에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특징을 부여하고자 하였다(Nicolet 1982, 273-277). 이러한 공화국에 대한 절대화가 이후 프랑스 정치사의 불편함들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점을 니콜레는 지적한다. 즉 공화주의 전통에 대한 신화화, 공화주의에 내재한 민족주의 및 애국주의의 과도한 경향 등이 그것이다.

- 8) 사실상 19세기 내내 국회의원들의 위선과 거짓, 사악한 특성 등에 대한 경고와 풍자가 존재했지만, 이 시기 일종의 “전형적인 사회적 형태”로서 자리잡았다(Rosanvallon 2000, 280-281). 마치 당시 언론에서 ‘자본가’ 혹은 ‘유대인’이 그렇게 묘사되는 것과 유사한 사회적 형태로 자리잡은 것이다.

나아가 의회의 전능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였다.⁹⁾ 대표적으로 이 과정에서 당시 헌법학자들의 역할은 이중적이었다. 한편으로 민주주의의 지나친 출몰로부터 의회 및 의회주의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동시에 의회의 법률적 전횡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 역시 존재했기 때문에 의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제기하였던 것이다. 헌법학자들은 ‘법’이 일반의지의 표현이며, 나아가 ‘일반의지의 주권’으로 등장하면서 입법자인 의회의 전능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dor 1995, 93-94). 이러한 과정에서 이 시기 ‘법치국가(Etat de droit)’ 개념이 확립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droit’에 묶여 있어야 한다. 여기서 droit는 이중적 의미, 즉 ‘법(law)’의 의미를 지니면서 동시에 ‘권리(right)’의 의미를 지닌다. 국가(Etat)는 droit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법치국가(Etat de droit)’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다. 법치국가의 경우 국가는 더 이상 정치적 개념으로서 ‘국민’ 혹은 일반의지 혹은 권력의 기원의 문제 등에 매달리지 않으며, 합리성과 그 기능성에 관심을 둘 뿐이다. 모든 정치적 문제는 이제 법률적 문제로 전환되며, 일반의지(volonté générale)는 일반이익(intérêt général)에 의해 대체되고, 개인은 시민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Redor 1995, 96).

20세기에 들어서 프랑스 의회는 무제한적이고 자의적인 의회주의에서 규칙에 근거하고 제한된 의회주의로 공화주의 체제 속에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1908년 클레망소가 “우리는 너무나 긴 연설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Garrigues & Anceau 2016, 58 재인용)라고 불평했듯이,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을 총회에서의 토론으로 이해하던 것에서 이제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전문화로 전환이 이루어졌다(Bouchet 2016, 165). 의회주의의 정착은 다른 한편으로 정당, 즉 제3공화국에서 서서히 체계화되고 1910년 법률을 통해 비로소 법적으로 인정되는 ‘원

9)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 의회의 전능에 대해 독일의 의회주의 비판자들은 “의회절대주의(parliamentary absolutism)” 혹은 “절대적 의회주의(absolute parliamentarism)”라는 표현을 통해 묘사하면서 의회주의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확산시켰다(Raithel 2019, 164).

내 교섭단체(*groupes parlementaires*)’의 현대적 정당으로의 체계화와 맞물린다 (Hudemann 1998, 320-329). ‘의회 내 그룹’은 서서히 조직화되고 특히 투표 규율의 확립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중요한 결정, 특히 예산위원회나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중요한 법률의 입안과 집단적 결정을 수행함으로써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의회의 의제는 정부에 의해 제시되었고,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합리화된 의회주의(*rationalized parliamentarism*)”를 만들고자 하였다.¹⁰⁾

2. 민주주의의 다층화

급진적 혹은 사회주의적 정당에게 의회 및 의회주의는 19세기의 산물이자 통제와 지배를 위한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의 도구로서 이해되었다. 나아가 엘리트주의적 의회주의로의 경향은 민주주의적 견제 및 민주주의와의 결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의회민주주의(*parliamentary democracy*)’라는 개념은 의회의 국민(*nation*)과의 결합을 의미하였다. 의회는 다양한 국민을 위한 공간이자 국민적 만남의 장소로서 간주되었다(Aerts et al. 2019, 11). 비록 프랑스혁명에서 시에이에스가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서 이행을 통해 추구했던 것이 인민(*people*)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표 권력(*representative power*)”을 확립시키는 것이었지만, 19세기를 걸쳐서 성장해온 민주주의의 힘은 대표권력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였다. 그것이 국민주권의 의미있는 실현이라고 판단하였고, 의회라는 대표권력을 통한 대의제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19세기말 의회주의의 확립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들이 이루어졌다.

우선 1880년대 의회주의에 대한 강조 및 과두정화되는 공화국에 대한 비판의

10) 프랑스나 영국 모두 의회주의의 발달은 일정한 행정부의 자율화를 동반하였고, 이 시기에 현대 국가의 특징이자 20세기 들어서 정치사회학자들의 관심사가 된 관료제의 등장을 볼 수 있다(Dreyfus 2000, 141).

의미로서 ‘국민투표(réferendum)’가 정치적 논의의 중심에 등장하였다. 이것은 제2제정에서 민주주의의 회화화한 형태로서 작동하였던 신임투표(plébiscite)와 구별되어 인민에의 직접적 호소 및 직접적 입법 등의 사유와 함께 민주주의적 측면을 강조한 흐름이었다. 이는 ‘이성’에 대한 강조 속에서 ‘수’에 대한 소홀함이 분명해지면서 등장한 반작용이었고, 또한 의회의 전능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길거리 민주주의가 등장하였는데, 대표적으로 “manif” - 시위를 의미하는 ‘manifestation’의 일종의 약어 -는 거리를 평화적이고 의례화된 방식으로 집단적으로 점거하는 행위였다(Rosanvallon 2000, 324). 이것은 과거의 폭동과도 거리를 두는 것이었고, 하나의 정치적 형태로서 등장한 것이었다. 그것은 한편으로 행동에 대한 원초적 형태였고 또한 대표에 대한 보충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수’의 평화적 연출이었다. 결국 의회주의에 일정한 반발은 다양한 방식의 민주주의적 표출이라는 반작용을 가져왔다. 물론 오랫동안 19세기 프랑스를 괴롭혔던 폭동과 같은 폭력적 방식의 민주주의적 표출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다양한 표현양식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르봉이 군중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엘리트에게서 그 구제책을 찾으려 했다면, 타르드는 “훨씬 더 맹목적이고 훨씬 더 지속적인” 군중과 여론에 의해 “감염”되고 “지성화된 공중”을 구분하고자 하였다(르봉 2005; 타르드 2012a). 타르드의 경우 여론(l’opinion publique)은 사회적 일반성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자 동시에 일반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았다. 특히 타르드는 ‘모방’에 대한 사회학적,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사회적 공통의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라 집단의 힘에 의한 ‘대중민주주의(G. Le Bon)’가 아닌 각 부분이 그 자신의 전통에 따르고 개인들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는 분산된 국민에 의한 공중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타르드 2012b; 모스코비치 1996, 337). 또한 타르드는 여론과 선거는 경쟁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충적인 정치적 형태들로 이해하고자 했으며, 실제적으로 의회가 국민의식을 표현할 수 있으면서 주권을 구현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문의 성장때문이었다고 보았다(타르드 2012a, 90-91). 르봉이 군중

의 시대를 강조하면서 한 지도자의 주위에 모인 대중의 민주주의를 원했다면, 타르드는 신문,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미디어가 당면 문제에 따라서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공중(le public)의 민주주의를 옹호하였다(모스코비치 1996, 337). 타르드는 조직과 커뮤니케이션이 군중을 공중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듯 제3공화국의 ‘인민’은 적절하게 ‘이성’에 의해 통제된 ‘수’로서 표현되었다.

의회주의의 절대화를 경계하면서 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를 제시하는 가운데 등장한 또 다른 개념은 산업민주주의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경제적 영역으로 확장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노동자통제, 노동자위원회 운동 등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산업의 영역에 적용된 일종의 대의제 형태였다. 즉 산업의 영역에서도 ‘능력’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합리적 조직화와 계획화라는 오래된 생시몽주의적 전통 – “공화국을 산업화하자” – 이 부활한 것이기도 했다(Rosanvallon 2000, 350-353). 1936년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마티농협약은 단체협약제도, 노동권의 확대, 고충처리위원회제 등과 함께 모든 기업에 노동자들의 대표가 진출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기업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경제민주주의를 이룰 것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디칼리즘에 대한 법적인 인정이 이루어지고 이제 노동조합은 “파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규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Rosanvallon 2004, 289). 생디칼리즘에 대한 인정은 경제적, 사회적 조절/규제에 있어서 보다 조직화된 시대로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02년 노동조건과 관련한 집단계약과 관련한 첫 번째 법안이 제출됨으로써 일종의 집단계약(convention collective)이 이루어졌다(Rosanvallon 2004, 295). 개인-유권자라는 원자화, 추상적인 집단적 의지의 산술적 집합에 대하여 생디칼리즘의 창시자들은 집단의 경제적 뿌리에 근거한 보다 실질적인 응축을 대체하고자 하였다. 전자는 일종의 “Démocratism”으로 지칭되었으며, 이에 반하여 생디칼리즘은 문화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정반대의 입장에 선다고 제시되었다(Rosanvallon 2004, 300). 민주주의가 의견(opinion)의 지배를 추구한다면, 생디

칼리즘은 이익의 동일성/동일한 이익에 근거하는 것이었다. 민주주의가 담론의 체제라고 한다면, 생디칼리즘은 생산의 문제에 둘러싸고 조직된다. 민주주의가 순수하게 형식적 평등을 추구한다면, 생디칼리즘은 구성원들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 이러한 대비 속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조직을 “의회주의화(parlementariser)”하는 모든 것을 비난하였다. 생디칼리즘은 거의 유사-공적 제도로 확립되었고, 나아가 진정한 사회혁명의 주체로 만들고자 하였으며, 생산관계의 완벽한 재조직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생디카 주권(souveraineté syndicale)”라는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Rosanvallon 2004, 351). 일종의 “정치적 생디칼리즘”이 출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주의적 정치사회와 생디칼리스트적인 경제사회 사이의 모순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집단적 특성에 대한 강조는 결국 개인에 근거한 민주주의의 부정처럼 비칠 수 있었다(Chatriot 2002, 20).

하지만 급진공화주의자 레온 블룸(L. Blum)이 “정치적 민주주의는 사회적 민주주의가 꽃피우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고, 사회적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근거하지 않으면 실질적이지도 안정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했듯이, 민주주의의 두 측면의 긴장과 공존은 분명하였다(Chatriot 2002, 1에서 재인용). 특히 이러한 문제는 의회든 혹은 다른 기구이든 대표의 문제와 연결되었다. 즉 누가 무엇을 대표할 것인가?의 문제가 곧 주권을 어떻게 구성해 낼 것인가?라는 국가권력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었다. 프랑스혁명과 함께 중간집단의 제거를 통해 개인/시민에 기반한 대표와 개인/시민의 집합체로서 국민에 기반한 대표 체계와 주권이 확립되면서 근대정치가 구체화되었다면, 19세기 ‘사회적인 것’의 등장과 함께 ‘사회적인 것’의 해결로서 ‘연대’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인 것’의 정치적 민주주의로의 연결고리를 위한 대표의 다양화를 통한 사회적 민주주의의 실현의 시도라는 것을 의미하였다.

생디칼리즘의 확산 및 다양한 민주주의적 구체화 속에서 공화국 정부는 노동위원회(Conseil du travail)를 통한 노동문제의 인식의 장치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 그것은 대표 과정에 대한 의회의 독점을 막고 행정부 역시 일정한 대표 과정을 실행할 수 있다는 사유의 전환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20세기 초반 제3공화국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 인식의 장치로 위원회를 행정부 내에 설치하였다. 행정부가 기존에 입법부의 법률을 실행하는 ‘집행부’라는 한정된 성격을 넘어서 사회문제의 적극적 인지와 그에 바탕을 둔 적극적 해결자로서 등장한 것이다. 행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또한 강화되면서 1932-33년에는 강한 ‘반의회주의’의 반향 속에서 정치적 결정의 신속화, 행정의 효율성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방향으로 국가개혁의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Roussellier 1992, 322-323). 결국 1936년 인민전선정부 하에서 국가경제위원회(Conseil National Economique)가 법으로 규정되어 소비자-노동자-자본가를 세 축으로 하여 국가경제 영역의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손영우 2018, 194-195).¹¹⁾

노동조합 및 다양한 방식의 대표기구들은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이성에 대한 독점을 막고 다양한 방식의 이익 대표 체계를 구성해 냈으로써 그것을 통한 국가권력 혹은 주권의 재구성이라는 사유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의 과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내면서 동시에 국민주권 혹은 인민주권을 이해하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표를 통한 주권의 구성을 사유한 것이다. 결국 이것은 기조(F. Guizot)의 이성의 주권론의 민주주의적 방식의 전유라고나 할까? 그러한 점에서 기조의 시대에 이성의 주권론이 비민주주의적 자유주의의 경향을 보였다면, 제3공화국의 민주주의 시대에 이성의 주권론은 대표의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의회주권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적 요소를 경시했던 영국이나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적 결단을 강조하면서 결국 전체주의로 흘렀던 독일과는 다른 모습의 프랑스

11) 경제위원회는 1946년 제4공화국 헌법 속에서 명시되었고, 1984년 사회변화에 맞추어 경제사회위원회로 개편되고, 2008년에는 경제사회환경위원회로 다시 확대변경되었다.

민주주의의 형태를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IV. 국민주권의 전환과 정치신학

주권자로서 국민(nation)과 그것을 구성하는 공화주의적 시민을 만들기 위한 공화국의 다양한 장치들, 의회주의의 확립과 이에 동반된 다양한 대표체계의 확립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권에 대한 새로운 사유, 즉 대표를 통한 주권의 구성 등등 일련의 사유들의 전환과 구체적인 실행의 과정은 제3공화국에서 확립된 국민국가로서 프랑스 공화국에 대한 이해가 프랑스 혁명 이래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중세의 왕이 인간으로서 자연적 신체와 공공선을 구현하는 정치적 신체를 결합하여 체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근대적 정치체의 등장은 자연적 신체로서 왕의 소멸과 비인격적 권력의 등장을 의미한다. 과거 전통적 권력이 초월적인 것, 즉 종교적인 것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과 영속성을 부여받았던 권력이라면, 근대적 권력은 이제 그로부터 벗어나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근거와 정당성의 기원을 부여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자연권과 계약론의 전통을 통해 근대 국가권력은 개인의 권리 양도와 그들의 동의에 기반한다. 실질적으로 근대 민주주의의 기원적 의미는 주권이 곧 인민에게 있다는 인민주권 - 국민주권 개념 역시 그로부터 유추된다 -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점에서 인민주권론은 근대 정치체의 근원이자 정당성의 문제이지만, 그것이 결국 정치신학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슈미트의 말처럼 “근대 국가이론의 중요 개념은 모두 세속화된 신학개념”인 것이다(슈미트 1988, 42). 우선 슈미트가 정치신학과 관련하여 주목한 것은 주권 개념이다. 슈미트는 루소의 주권개념이 신학개념의 정치화를 뚜렷하게 보인다고 말한다. 또한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하나의 거대한 인격으로 신화화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근대 주권 개념의 신화화에 앞서 진행되어야 했던 것은 중세 신성주권의 세속화였다. 프랑스 혁명 당시 세속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주권의 세속화, 즉 신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군주주권을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 국민주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다. 물론 계몽주의 시기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인의 이성에 기반한 사회에 대한 정치철학적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세속화가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프랑스혁명 시기였다. 교회 재산의 국유화와 함께 사회구조적으로 출생, 결혼, 사망 등의 형식의 세속화라는 삶의 세속화가 진행되었고,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시공간의 세속화가 진행되었다(백인호 2013).¹²⁾ 혁명은 기독교를 분명 공적 영역에서 몰아냈고, 종교는 사적인 믿음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신화’는 사라지지 않았고, 새로운 정치신학으로 등장하였다. 우선 프랑스 혁명은 주권자로서 “새로운 인민”을 창조해내고자 기획하였다(Ozouf 1989). 그것은 새로운 주권자로 등장한 ‘인민’을 구성하는 “재탄생된 인간(l’homme régénéré)” - 교회로부터 벗어나 세속화된 새로운 인간 - 이었고, 그들을 결합시켜 새로운 주권자 ‘네이션’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이 작업은 급속한 세속화 작업과 동시에 새로운 주권자로 등장한 인민에 대한 ‘신격화’ 작업을 동반하였다. ‘최고존재의 축제’에서 보여지는 시민종교는 공화주의자 루소가 이미 분명하게 언급했을 만큼 중요한 과제로서 애국심을 위한 시민적 믿음이 필요하였다. 미슐레(1846)가 “프랑스혁명은 교회자체였다”라고 선언했던 것은 프랑스혁명 이후 왕 혹은 교회의 신성함을 대신하는 인민의 신성함, 교회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인민의 목소리, 순교자 예수를 대신하는 혁명의 희생자들, 교회의 제단을 대신하는 죄수대, 성배주를 대신하는 눈물을 발견하였다는 의미였다(미슐레 2021).¹³⁾ 미슐레는 프랑스혁명을 통해 초

12) 프랑스혁명 시기 강력한 비기독교화 정책들, 예를 들어 탈기독교화를 위한 시공간의 새로운 구성으로 종교적 상징의 파괴와 새로운 거리 및 광장의 세속적 명칭 부여, 혁명력을 통한 세속적 시간의 재구성, 교육에서 탈 기독교화 등등 작업이 진행되었다.

13) 뒤르케임 역시 종교에 대해 서술한 책에서 사회 속에서 등장하는 ‘신성화’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프랑스 혁명에서 “조국, 자유, 이성”이 성스러운 사물로 변화되었고, 그 자

월적 존재로서 인민이 탄생했음을 보았다. 미슐레에게 인민은 새로운 종교적 교주이자 조국의 희망이었다. 그리고 프랑스혁명은 인류의 새로운 정신사 속에서 인민의 새로운 우애 정신이 등극하도록 만든 계기였다. 미슐레는 군주제의 가치와 단절을 확정하면서 그것을 대신하는 새로운 이상을 민주주의적 인민과 정치적 자유에서 찾고자 하였다.

세속화를 통해 용어들이 전환되었지만, 기본적인 원칙이 보존되고 있는 표상 시스템의 전개 속에서 정치신학적인 것들이 드러나고 본질적인 것은 유지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마치 그것은 시에예스가 혁명시기 “국민은 우선적으로 존재하며 모든 것의 기원이다. 국민의 의지는 항상 합법적이며 법률 그 자체다”라고 확정하면서 국민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임을 선언하였던 사실로부터 출발한다(Sieyès 1989). 시에예스는 헌법이 근본적임을 강조하고 그것은 일상적인 권력, 즉 구성된 권력(*pouvoir constitué*)의 작업이 아니라 ‘헌법제정권력’의 작업임을 강조하였다. 그 과정에서 시에예스는 세 종류의 권력을 구분하였다. 우선 ‘구성된 권력’은 법률의 제정 및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일상적인 입법부 및 행정부를 의미하며, 이 ‘구성된 권력’을 발생시키는 권력이 바로 ‘헌법제정권력’이다. ‘헌법제정권력’은 헌법을 제정하는 권력이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출현하며 한시적인 권력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권력으로 ‘임명 권력(*pouvoir commettant*)’이 있으며,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행사되는 권력으로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를 통해 실행된다. 시에예스는 “인민은 스스로 유일한 임명 권력을 행사하며, 그것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게 될 사람들을 선택하고 위임하는 것이고, 또한 그 권리에 의해 공적 기관을 구성하게 한다”라고 말한다(Sieyès 1789c, 36).

결국 주권자 인민과 헌법제정권력으로서 인민에 대한 의미 부여는 다른 한편

체가 “교리, 상징, 제단, 축제일들을 가지는 형태”로 등장하였고, ‘이성과 최고존재에 대한 숭배’는 대중들의 충동적인 열망들에 일종의 공적인 만족감을 주려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뒤르케임 1992, 306).

으로 신격화된 인민의 탄생이라는 결과를 동반하였던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이다. 칼 슈미트는 시에에스를 참조하여 인민(people)의 존재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헌법 이전에, 헌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인민으로서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로서의 인민, 둘째는 “헌법 안에” 존재하는 인민으로서 헌법에 정해진 규범과 절차에 따라 선거에 참여하거나 인민발안제도를 통해 의사를 표하는 인민, 셋째는 “헌정체제와 비견되는” 혹은 “헌법 옆에 있는” 인민으로서 제도적인 틀 바깥에서 여론의 주체로서 존재하는 비정형화된 인민을 지칭한다(Schmitt 2008, 268-271). 슈미트는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묘사하고 있는 인민의 지위가 “만물의 원인, 목적, 발단, 귀결점인 신이 세계에 대해서 가지는 지위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근대 국가에서의 인민을 신격화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슈미트 1988, 52). 헌법 제정권력으로서 주권자 인민은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헌법 이전에 그리고 헌법 제정 이후에도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서 등장한 것이다. 슈미트는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라는 언명과 함께 그 “예외 상황이란 신학에서 기적에 비유할만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관계를 분명히 한다(슈미트 1988, 42). 이는 슈미트의 결단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가 비판하는 자유주의 헌법학, 즉 근대의 법치국가의 이념이 “기적을 추방”하고 예외를 거부했음을 주장한다. 결국 바이마르 공화국을 통한 나찌의 등장의 이론적 흐름을 슈미트의 사유 속에서 읽어볼 수 있다.

칼 슈미트는 초월적 존재로서 주권자를 상정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질서 전체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규범의 체계 바깥에 있지만 규범의 근거를 형성하는 주권개념을 법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슈미트 2019, 12-13).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가 가지고 있는 전제는 주권자 국민의 규범적 정당성의 선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을 포함한 정치체의 기원이자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주권자 국민의 정당함이라는 전제가 신학적 영향 혹은 침투 속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¹⁴⁾ 결국 그러한 정당함을 갖추기 위한 의지적 노력이

국민의 단일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테러를 만들어내는 전체주의 사회의 구성으로 귀결된 것이다. 이미 1789년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등장하였던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시기에 보여졌던 ‘대표의 절대화’, 즉 인민과 대표의 일치가 발생하였다. 인민주권을 절대화하면서 동시에 인민과 지도자 즉, 로베스피에르와의 동일시가 발생하면서 대표의 절대화가 발생한 것이다. 시에에스의 권력에 대한 구분을 통해 주권자 인민의 헌법제정권력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였지만, 일상적 상황에서는 구성된 권력의 통치, 즉 주권자 인민을 대표하는 권력의 절대화가 발생한다는 점은 분명하였다(Gauchet 1995). 이에 대한 반대항이 반민주주의적 자유주의에서 출발하였던 기조의 이성의 주권론이었다. 인민이 아니라 사회 속에 흩어져 있는 ‘이성’을 의회라는 합리적 집단에 의해 발견하고 구성해 내어 주권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프랑스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은 프랑스혁명 이후 19세기의 경험, 즉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긴장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해소시키고 또한 결합시켜 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세속화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공화주의적 시민의 교육과 양성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공화주의적 시민들의 연대를 통한 단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수행하였다. 공화국은 공화주의적 교육을 통해 형성된 시민에서 출발하여 시민들의 연대에 의한 공동체의 구성 그리고 그러한 시민들의 총합으로서 국민의 주권에 기반한 국가권력을 구성하지만 동시에 국가는 사회로부터의 표상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의 집합적 의식 내지는 이성을 결집하는 것을 통해 국가권력의 행위를 결정한다. 분명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한 국민의 구성과 일반의지의 형성 그리고 그것의 국가권력으로의 전환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특정한 영역의 절대화나 신성화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주권의 원칙에 대한 천명은 분명 국민의 일반의지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주권의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

14) 바이마르 민주주의의 특수성으로서 의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간극, 특히 의회주의에 대한 불신과 결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물신화의 결과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를 살펴본 권형기(2022)의 논의는 프랑스의 의회주의와 민주주의와 관계에 좋은 대비를 찾을 수 있다.

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국민의 일반의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는 프랑스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난제였다. 제3공화국은 의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을 통해 이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공화주의적 시민 교육을 통해 공화국에 합당한 시민을 만들어내고자 하였고, 지속적인 세속화 작업 - 1905년 라이시테 법이 그 정점이다 - 을 통해 교육과 정치 등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공화주의적 시민은 공화국의 근간이었고, 이들은 민주주의적 주체로서 자리매김되었다. 공화주의적 시민에 의한 의회의 구성과 의회주의화가 진행되면서 대표의 과정을 통한 국민의 일반 이익을 인식하는 것은 기조(Guizot)의 ‘이성의 주권’의 민주주의적 시도였다. 의회를 통한 대표의 과정과 더불어 다양한 방식의 민주주의적 과정과 다양한 이익 대표체계의 확립을 통해 의회가 절대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가 작동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대표를 통한 주권’의 확립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제3공화국이 동시에 공화국의 신성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은 분명하였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을 전후에 축제의 조직화, 프랑스 혁명사의 정립과 재해석 등등의 작업을 통해 공화국 프랑스와 프랑스 혁명을 신성화하였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사 해석에서 혁명의 정통성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의 결과는 당통(Danton)이었다. 가장 급진적이었던 로베스피에르나 자유주의적 경향이 브리소도 아닌 부패한(?) 당통에게 정통성을 부여했던 것은 그가 탈기독교화와 세속화를 주도했기 때문이었다. 세속화된 공화국에 대한 강조와 지속적인 세속화 작업을 통해 공화국은 다시 신성함을 획득하였다. 공화국의 신성화에 의한 공화국의 존재 자체의 수용은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에게도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세기의 전환기에 대표적인 세 명의 프랑스 사회주의자, 게드(J. Guesde), 바이양(E. Vaillant), 조레스(J. Jaurès) 모두 공화주의자들이었고, 공화국의 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체제로서 남아 있었다(Sadoun 1993, 25-37). 그들에게 공화국,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였다.

인민은 주권자로서 존재한다. 다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개인, 계급, 집

단도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결정된 형태를 부여할 수 없다. 주권자로서 인민의 ‘단일성’을 상징하는 민주주의적 원칙과 실제적인 현실로서 인민의 ‘다원성’으로부터 출발하는 대표의 원칙 사이의 간극에 대한 인정과 동시에 그 간극을 극복 혹은 적어도 좁혀보려는 현실정치의 노력이 바로 근대 민주주의 역사일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징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사이의 간극의 존재를 강조하였던 르포르(C. Lefort)의 사유를 접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그 토대의 확실성, 역사법칙에 대해 열려 있으며, 권력을 체화할 수도, 전유할 수 없는 하나의 공백의 장소로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르포르 2016). 전체주의 사회는 이러한 비결정성을 거부하고 권력의 장소를 특정한 계급과 집단을 표상하는 이들이 독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은 민주주의적 과정을 강조하면서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권력기구들에 의한 독점 역시 발생하지 않도록 권력분립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즉 주권자로서 인민/국민의 신성화와 공화국의 신성화가 진행되었지만, 그것을 표상하는 권력의 장치들이 독점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V. 글을 맺으며

세계사적 혁명으로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라는 보편주의적 원칙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대의 정치공동체로서 국민국가가 구성되는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프랑스라는 하나의 국민국가 틀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정치적 형태를 갖추는가와 특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9세기 프랑스의 역사였다. 프랑스 혁명 과정을 통해 마키아벨리와 대서양 전통의 공화주의와는 구별되는 ‘사회적’ 공화국의 모습 그리고 주권을 둘러싼 풍부한 논의를 끌어냈던 것이 프랑스 공화주의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역사이기도 하였다. ‘사회적인 것’이 19세기 내내 프랑스 정치를 흔들었고,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행한 것이 제3공화국 프랑스였다. 공화주의적 시민 교육을 통해 공동체 속의 시민을 만들어내고, 그들 간의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공화주의적 사회를 구성하고자 한 것이 제3공화국 공화주의의 목표였다. 또한 그러한 시민들에 의해 대표로 구성된 의회와 의회주의의 다양한 원칙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의 틀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고 의회주의는 이미 토크빌이 지적했듯이, 사회적 상태로서 민주주의 그리고 혁명 이해, 국민주권의 실현으로서 민주주의라는 것에 의해 일정한 견제와 균형을 갖고자 하는 긴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프랑스혁명을 통해 부활한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19세기를 거치면서 또한 프랑스 공화주의의 형성을 통하여 ‘근대적’ 민주주의로 전환되었다.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정, 특히 근대 민주주의를 통한 국민국가의 형성은 한편으로는 중세 교회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세속화의 과정을 거치지만, 권력의 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세속화된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신학적 문제설정을 통해 헌법제정권력으로서 주권자인민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정립과 더불어 그것의 민주주의적이고 공화주의적인 구성은 권력의 일탈을 막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가브리엘 타르드 저. 이상률 역. 2012a. 『여론과 군중』. 서울: 지도리.
- _____. 이상률 역. 2012b. 『모방의 법칙』. 서울: 문예출판사.
- 구스타브 르 봉 저. 이상돈 역. 2005. 『군중심리』. 서울: 간디서원.
- 권형기. 2022. “민주주의관과 민주주의 붕괴: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에 대한 재고찰”. 『국제·지역연구』. 31권 2호 1-57.
- 백인호. 2013. “18세기는 세속화의 결정적 시기였는가?: 프랑스혁명을 중심으로”. 김응중, 민유기 외. 『프랑스의 종교와 세속화의 역사』. 대전: 충남대출판문화원.
- 비에이라 & 런시먼 저. 노시내 역. 2020. 『대표: 역사, 논리, 정치』. 서울: 후마니타스.
- 손영우. 2018. 『사회적 대화』. 서울: 이매진.
- 세르쥬 모스코비치 저. 이상률 역. 1996. 『군중의 시대』. 서울: 문예출판사.
- 에밀 뒤르케임 저. 노치준, 민혜숙 역. 1992.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서울: 민영사.
- 에밀 뒤르케임 저. 권기돈 역. 1998. 『직업윤리와 시민도덕』. 서울: 새물결.
- 자크 동즐로 저. 주형일 역. 2005. 『사회보장의 발명』. 서울: 동문선.
- 쥘 미슐레 저. 조한욱 역. 2021. 『미슐레의 민중』. 서울: 교유서가.
- 칼 슈미트 저. 김효전 역. 1988. 『정치신학』. 서울: 법문사.
- 칼 슈미트 저. 김효전 역. 2019. “헌법학”. 『독일헌법학의 원천』. 서울: 산지니.
- 클로드 르포르 저. 홍태영 역. 2016. 『19-20세기 정치적인 것에 대한 시론』. 서울: 그린비.
- 홍태영. 2021. “프랑스 공화국과 공화주의의 탄생”. 『한국정치연구』. 30집 2호, 1-29.
- Aerts, R. & van den Berg, J. Th. J. 2019. “The Ideal of Parliament in Europe since 1800: Introduction”. Aerts, R. ed. *The Ideal of Parliament in Europe since 1800*. Palgrave.
- Berstein, Serge. 1992. “La politique sociale des Républicains”. S. Berstein et O.

- Rudelle. dir. *Le modèle républicain*. Paris: puf.
- Berstein, Serge. 1999. “Le modèle républicain: une culture politique syncrétique”. S. Berstein. dir. *Les cultures politiques en France*. Paris: Seuil.
- Blais, Marie-Claude. 2007. *La solidarité*. Paris: Gallimard.
- Bouchet, T. 2016. “French Parliamentary Discourse, 1789-1914”, in Ihalainen, P. Ilie, C. & Palonen, K. ed. *Parliament and Parliamentarism. A comparative history of a european concept*. New York: Berghahn.
- Bourgeois, Léon. 1912. *Solidarité*. 7e éd. Paris: Armand Colin.
- Chatriot, Alain. 2002. *La démocratie sociale à la française*. Paris: La découverte.
- Darriulat, Philippe. 2001. *Les patriotes*. Paris: Seuil.
- Déloye, Y. 1994. *Ecole et citoyenneté. L'individualisme républicain de Jules Ferry à Vichy: controverses*. Paris: Presses de la FNSP.
- Dreyfus, Françoise. 2000. *L'invention de la bureaucratie*. Paris: La découverte.
- Durkheim, E. 1886. “Les études de science sociale.” in *La science sociale et l'action* (1987). Paris: PUF.
- _____. 1888. “Cours de science sociale. Leçon d'ouverture.” in *La science sociale et l'action* (1987). Paris: PUF.
- _____. 1899. “Une révision de l'idée socialiste.” *Textes*. Vol. III. présentés par V. Karady. Paris: Minuit.
- _____. 1900~1905? “L'Etat.” in *Textes*. Vol. III, présentés par V. Karady. Paris: Minuit.
- _____. 1909. “Sociologie et science sociale.” in *Textes*. Vol. III, présentés par V. Karady. Paris: Minuit.
- _____. 1996. *De la division du travail social*. (초판: 1893). Paris: PUF.
- Grévy, Jérôme. 1998. *La République des opportunistes. 1870-1885*. Paris: Perrin.
- Gueslin, A. 1998. *L'invention de l'économie sociale. Idées, pratiques et imaginaires coopératifs et mutualistes dans la France du XIXe siècle*. Paris: Economica.
- Garrigues, J. & Anceau, E. 2016. “Discussing the First Age of French

- Parliamentarism(1789-1914)”. in Ihalainen, P. Ilie, C. & Palonen, K. ed. *Parliament and Parliamentarism. A comparative history of a european concept*. New York: Berghahn.
- Gauchet, Marcel. 1995. *La révolution des pouvoirs, La souveraineté, le peuple et la représentation 1789~1799*. Paris: Gallimard.
- Hudemann, Rainer. 1998. “Les Groupes parlementaires dans les stades de formation du parlementarisme français au XIXe siècle”. S. Berstein et P. Milza. dir. *Axes et méthodes de l'histoire politique*. Paris: puf. 319-333.
- Ihalainen, P. 2016. “European Parliamentary Experiences from a Conceptual Historiocal Prsperspective”, in Ihalainen, P. Ilie, C. & Palonen, K. ed. 2016. *Parliament and Parliamentarism. A comparative history of a european concept*. New York: Berghahn.
- Lalouette, Jacqueline. 2002. *La république anticléricale XIXe-XXe siècles*. Paris: puf.
- Murard, L. et Zylberman, P. 1996. *L'hygiène dans la République. La santé publique en France ou l'utopie contrariée 1870~1918*. Paris: Fayard.
- Ozouf, Mona. 1989. *L'homme régénéré*. Paris: Gallimard.
- Pitkin, Hanna. 1972.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aithel, Th. 2019. “‘A Bad Parliamentarism’: Normative Expectations and Criticism of Parliamentarism in the Weimar Reichstag”, in Aerts, R. ed. *The Ideal of Parliament in Europe since 1800*. London: Palgrave.
- Redor, Marie-Joëlle. 1995. “‘C’est la faute à Rousseau...’ Les juristes contre les parlementaires sous la IIIe République”. *Politix*. Vol. 8, No. 32.
- Rosanvallon, P. 1985. *Le Moment Guizot*. Paris: Gallimard.
- _____. 1992. *Le sacre du citoyen, Histoire du suffrage universel en France*. Paris: Gallimard.
- _____. 1998. *Le peuple introuvable. Histoire de la représentation démocratique en France*. Paris: Gallimard.

- _____. 2000. *La démocratie inachevée. Histoire de la souveraineté du peuple en France*. Paris: Gallimard.
- _____. 2004. *Le Modèle politique français. La société civile contre le jacobinisme de 1789 à nos jours*. Paris: Seuil.
- Roussellier, Nicolas. 1992. “La contestation du modèle républicain dans les années 30: La réforme de l’Etat”. S. Berstein et O. Rudelle. dir. *Le modèle républicain*. Paris: puf.
- Sadoun, Marc. 1993. *De la démocratie française*. Paris: Gallimard.
- Schmitt, Carl. 2008. *Constitutional Theory*. translated et edited by J. Seitzer. Duke University Press.
- Sieyès, E. 1789a. “Vues sur les moyens d’exécution dont les représentants de la France pourront disposer en 1789.” *Oeuvres des Sieyès*. Tome I. Notes liminaires par Marcel Dorigny. Paris: EDHIS. 1989.
- _____. 1789b. “Quelques idées de Constitution applicables à la Ville de Paris. En juillet 1789.” *Oeuvres des Sieyès*. Tome II. Versaille: Baudouin.
- _____. 1789c. “Preliminaire de la Constitution française - Reconnaissance et exposition raisonnée de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Oeuvres des Sieyès*. Tome II. Paris: Baudouin.
- _____. 1989. *Qu’est-ce que le tiers Etat?* Paris: PUF.
- te Velde, H. 2019. “Between National Character and an International Model: Parliaments in the Nineteenth Century”. in Aerts, R. ed. *The Ideal of Parliament in Europe since 1800*. London: Palgrave.

Formation of French Republican Model and ‘Modern’ Transformation of Democracy

Hong, Taiyoung |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he formation of nation-state in France, which started with the 1789 French Revolution, is accomplished with the establishment of french republican model in the 3rd Republic. In the 19th century, french democracy is formed, which is based on individuals, not the God, constitution of nation and citizen, establishment of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formation of democracy as a core and mediating process. The history of democracy means the formation of nation-state based national sovereignty as that of secular power, and, at the same time, it means a politico-theological problematic. This article aims to comprehend ‘modern’ transformation of democracy, in examining the french republican model in the 3rd republic. This article is composed of examination of the image of republican citizen and civic education(ch. II), the solidarism as solution of ‘the social’, which is the core of republic(ch. III), and lastly, politico-theological comprehension of modern nation-state to seize the character of republican community(ch. IV).

Key Words | Republican Model, Democracy, Politico-theology, Solidarism, Sovereignty